

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

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이선욱

전화 041-620-4302/ 팩스 041-620-4452

## 보도자료

2019. 1. 16.(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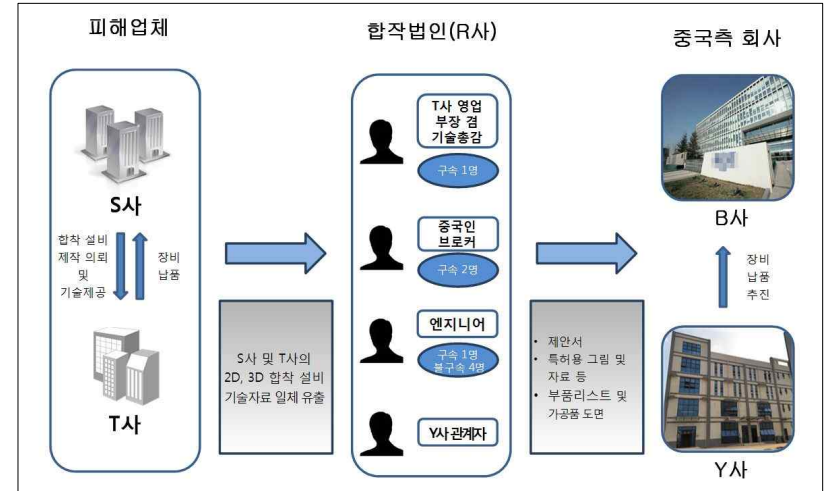
자료문의 : 부장검사실  
전화번호 : 041-620-4304  
주책임자 : 부장검사 장성철

### 제목 S社の 휴대폰 OLED 패널 합착기술 유출 사범 8명 기소

-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금융·경제범죄전담부(부장검사 장성철)는, 충남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송치된 T社(S社の 휴대폰 패널 협력업체)에 대한 기술 유출 사건의 보강수사를 통해,
  - T社の 영업부장 등이 중국인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**중국에 합작회사를 설립**하고, 이를 통해 S社에서 보유한 국가지정 첨단기술인 '3D OLED 패널 합착(Lamination)' 기술을 비롯한 OLED 패널 합착 기술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하고,
  - 범행을 주도한 T社 영업부장, 한국계 중국인 브로커 2명, 前 T社の 엔지니어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, 이에 가담한 前·現 T社 엔지니어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하였음
- ※ OLED 패널 합착기술이란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패널과 커버글라스 등을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공상태에서 면대면으로 합착하는 기술로, 평면용 2D 기술과, 곡면용 3D 기술 등으로 구분됨
- ※ S社は 전세계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95.7%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, T社は 모바일 패널 제조 설비 등을 제작하는 S社 협력업체로 2017. 12. 기준 매출액 1조 1,384억 원, 시가 총액 1조 282억 원 규모의 코스닥 상장 회사임

## I

## 사건 개요



- 피고인들은 중국 Y社(S社の 경쟁사인 중국 B社에 설비납품 추진) 관계자들과 중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한 다음, S社와 T社の 기술정보를 빼돌려 OLED 패널 합착 장비를 제작한 후 B社에 납품하기로 공모, 2018. 3.경 중국 허페이에 합작법인인 **R社를 설립**
- 2018. 3~5.경 T社에서 보유하고 있던 S社와 T社の 3D 합착 설비사양서 및 설계도면, 2D 합착 설비사양서 및 설계도면 등 기술 자료를 부정 취득
- 위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제안서, 도면 등을 작성한 후 Y社の 대표에게 수시로 송부하고, 2018. 5.경 B社の 관계자를 만나 제안서 프리젠테이션
- 죄명 : 산업기술보호및유출방지에관한법률위반,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, 업무상배임
- 피고인별 처분내용 별첨

## II

### 수사 경과

- '18. 3. 1. J社, ㄹㅇㅇ(엔지니어)에 대하여 기술유출혐의로 고소
- '18. 3. ~ 9. 충남지방청, 고소사건 수사 중 T社 기술이 유출된 사실 확인
- '18. 9. 28. 충남지방청, ㄱㅇㅇ 구속, ㄴㅇㅇ 등 7명 불구속 송치(총 8명)
- '18. 10. 12. 법원, ㄱㅇㅇ에 대한 적부심 인용, 석방(T社와의 합의 이유)
- '18. 10. ~ 12. 검찰, 피의자들의 계좌, 이메일 및 사무실 등 압수수색, 관련자 조사
  - ※ 송치된 T社 기술 뿐 아니라 S社에서 보유한 국가지정 첨단기술 등이 대량 유출된 사실 확인
- '18. 12. 27. ㄱㅇㅇ(T社 영업부장) 재구속, ㄴㅇㅇ, ㄷㅇㅇ(각 중국인 브로커) 구속
- '19. 1. 7. ㄹㅇㅇ(엔지니어) 구속
- '19. 1. 15. ㄱㅇㅇ 등 4명 구속기소, ㄹㅇㅇ 등 4명 불구속 기소

## III

### 수사 결과

#### 1. S社의 첨단기술 중 일부 해외 유출 시도 적발

- 피고인들이 T社에서 유출한 기술정보에는 T社와 S社의 3D OLED 패널 합착 기술 및 신제품에 관한 기술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음
- S社가 생산하는 엠티패널은 '갤럭시 엠티 시리즈'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로, 이 패널 생산에 이용되는 3D OLED 패널 합착 기술은 S社가 약 6년 동안 엔지니어 38명, 1,50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개발한 산업기술보호법상의 **첨단기술에 해당함**

#### 2. 중국에 직접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범행

- 주로 국내 기업의 전·현직 임직원들이 해외의 경쟁사로부터 제안을 받아 이직하면서 기술을 빼돌리던 범행 수법에서 나아가, 국내 기업의 전·현직 직원과 중국인 브로커 등이 **중국 기업인과 공모하여 중국에 합작회사를 직접 설립**한 후 빼돌린 기술을 이용한 설비를 생산, 판매하려한 사실을 확인함
- ※ 합작회사를 설립할 경우 기술유출에 따른 회사 수익이 직접 기술유출 사범에게 귀속되는 형태가 되어, 범행 동기가 강화되고 기술유출 범위가 확대될 우려 발생

#### 3. 추가수사로 S社의 피해 밝히고 기술유출 범행에 대해 엄정 대처

- T社 기술에 대한 유출 범행으로만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압수수색,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S社의 주요 기술까지 유출된 사실을 밝히고, T社 영업부장, 중국인 브로커, 엔지니어 등 가담정도가 중한 피고인들을 구속하는 등 주요기업의 기술 유출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

#### 4. 압수수색 등을 통한 추가 피해 최소화

- 피고인들이 유출한 기술을 저장해 둔 하드디스크 등을 모두 압수하고, 유출된 기술을 활용한 설비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전에 주요 피고인들을 구속함으로써, 국내 첨단기술의 추가적인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관련 피해를 최소화 함

[별첨]

### 피고인별 처분 내용

연번	피고인	직책	범죄사실	처분
1	ㄱ○○	T社 영업부장	합작회사 설립, 기술자료 유출, 제안서 및 설계도면 작성 지시	구속기소
2	ㄴ○○	한국계 중국인, 무역회사 운영	ㄱ○○에게 최초 범행 제안, 합작회사 설립, 자금 투자, 통·번역 담당	구속기소
3	ㄷ○○	한국계 중국인, 무역회사 직원	ㄱ○○에게 최초 범행 제안, 통·번역 담당	구속기소
4	ㄹ○○	엔지니어	제안서, 설계도면 등 작성	구속기소
5	ㅁ○○	엔지니어	제안서, 설계도면 등 작성	불구속기소
6	ㅂ○○	엔지니어	제안서, 설계도면 등 작성	불구속기소
7	ㅅ○○	엔지니어	제안서, 설계도면 등 작성	불구속기소
8	ㅇ○○	설비업체 운영	ㄱ○○에게 최초 범행 제안, 합작 회사 설립	불구속기소